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문서번호 슈로더 11- 310 (박경순 3783 0508)

2010. 12. 1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투자신탁상품 관련부서장

제 목 투자신탁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운용하는 주요 펀드에 대한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변경 내역: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 관련 해지조항 문구 수정, 재무제표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4. 변경대상 투자신탁명: 첨부 참조
5. 변경시행일: 2010년 12월 13일

첨 부: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부. 끝.

수 신 처 : 대신증권,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하이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HSBC 은행, SC 제일은행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전 길 수 (인)



첨부: 변경 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사항

판매사	펀드 명칭 및 변경사항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A (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 (채권혼합)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H (채권-재간접형)
투자설명서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대신증권	○		
메릴린치 증권	○		
미래에셋증권	○		○
삼성증권	○		○
키움증권			○
푸르덴셜 투자증권	○		
하나대투증권	○		
하나은행			○
하이투자증권	○		○
한국씨티은행	○	○	
HSBC은행		○	
SC제일은행	○		

주1)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